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60호 2020. 12. 11(금)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0-212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왕정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위 열람 공고 ----- 1
- 남원시 공고 제2020-2135호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 4
- 남원시 공고 제2020-2150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공고문 ----- 8
- 남원시 공고 제2020-2156호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5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 2020-212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왕정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왕정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일

남 원 시 장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

시설구분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비고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62,157	감) 356,951	1,405,206	1,943	-	1,943	2,483	-	2,483	
시설면적 총계	159,735	증) 26,099	185,834	1,943	-	1,943	2,483	-	2,483	
교통시설	68,902	증) 9	68,911	-	-	-	-	-	-	
조경시설	10,612	-	10,612	-	-	-	-	-	-	
휴양시설	9,816	증) 29,039	38,855	-	-	-	-	-	-	
운동시설	10,062	감) 2,949	7,113	-	-	-	-	-	-	
교양시설	12,435	-	12,435	676	-	676	676	-	676	
편익시설	15,268	-	15,268	1,156	-	1,156	1,696	-	1,696	
관리시설	504	-	504	111	-	111	111	-	111	
도시농업 시설	32,136	-	32,136	-	-	-	-	-	-	
녹 지	1,602,422	감) 383,050	1,219,372	-	-	-	-	-	-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3	왕정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면적 : 1,402,206㎡ 감) 356,951㎡ · 시설면적 : 185,834㎡ 감)26,099㎡ · 녹지면적 : 1,219,372㎡ 감)383,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욕장 조성으로 인하여 시설면적 확대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2020.7.1.)에 따른 시설 면적 변경

2. 편입토지조서(별첨)

3. 공람 기간 : 신문공고 익일 후 14일간

4. 공람 장소 및 주민 의견서 제출처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도서 : “실음생략” (관련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0-2135호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0조1제1항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남원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하오니,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지정예고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전라북도 남원시청 문화예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1.

남 원 시 장

1. 공고명 :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2. 목 적

-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 가치가 있고 향토의 역사와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료로 남원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상 향토문화유산

구분	종목	명칭	수량	소유자	위 치	비 고
1	유형 문화재	남원 박형기 가옥	1원 / 1,451㎡	박형기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270-1	
2	유형 문화재	남원 양사재	1원 / 1,721㎡	남원위성조합	전북 남원시 왕정동 532-1	
3	유형 문화재	남원 신촌동 석조약사여래좌상	1기	주식회사 대찬산업개발	전북 남원시 신촌동 산20	
4	유형 문화재	남원 신파리 석조여래입상	1기	순흥안씨 신흥종중	전북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산142	

4. 지정예고 사유

○ 남원 박형기 가옥

박형기 가옥은 죽산박씨 집성촌인 남원 수지면 흠실마을에 위치함. 흠실마을은 고려 말 충신이었던 충현공(忠顯公) 박문수(朴門壽)의 후손들이 세거하는 집성촌임. 이 마을은 지리산 노고단에서 내려오는 지맥 중 하나인 견두산(호두산) 자락에 있는데, 지리산의 기운이 견두산을 타고 내려와 마을에 정기를 모으는 전형적인 명당 형국(虎頭穴)이라고 함.

박형기 가옥은 조선후기에 초창되었다가 1920~1930년대 재축된 것으로 보이며 경사지에 축대를 조성하여 아랫단에 사랑채가 있고 윗단에 안채가 있음.

흠실마을에 있는 몽심재, 죽산박씨 종가와 함께 보존하여 흠실마을의 경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상류가옥의 특징, 건축기법이나 재료의 우수성 등 향토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음.

○ 남원 양사재(南原 養士齋)

남원 양사재는 유생들이 모여서 경사를 논하고, 과거에 대비하며, 향풍을 바로 잡는 기능을 수행하던 건물로서 조선시대의 유교적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건물임. 1642년(인조 20)에 창건되었다가 1854년(철종 5) 중건하였고, 1870년(고종5)에 증축함. 조선후기의 건축수법을 잘 보여주고 있어 가치가 높음.

공간의 구성은 솟을대문과 토석담장으로 이루어진 일곽의 대지 안에 강학공간인 양사재와 부속사가 있음. 양사재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고, 부속사는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되어있음.

도내에 남아 있는 양사재는 소수에 불과하여 희소성과 건축물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음.

○ 남원 신촌동 석조약사여래좌상(南原 新村洞 新村洞 石造藥師如來坐佛)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했던 항마촉지인 약사불 도상으로 낮은 육계, 움추린듯한 상체 표현, 배 앞의 형식화된 옷주름 등에서 고려 초의 양식적 특징을 보임. 총높이 125cm, 광배 너비 105cm

남원지역의 다른 석불들인 덕음암 석불좌상, 호기 마애여래좌상보다 옷주름 선과 전반적인 신체 비례의 표현 등이 잘 표현되었고 고려시대 불상의 형식을 잘 보여줌.

남원 신촌동 석조약사여래좌상은 통일신라시대의 약사불 도상을 계승하면서 고려 초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는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향토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음.

○ 남원 신파리 석조여래입상(南原 新波里 石造如來立像)

현재 절터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흥사라는 절이 있었던 곳에 위치하며 한 돌

에 광배와 불상을 함께 조각한 고려 초기 남원지역 불상과 유사한 조형성을 보임. 총높이 264cm, 광배 너비 137cm로 불신과 불두가 반파되었던 것을 1990~2001년 사이에 현재와 같이 남동향으로 복원됨.

한 돌에 광배와 불상을 함께 조각한 점과 광배에 연주문과 화염문을 표현하고 양손을 가슴 앞으로 올린 자세 등에서 미륵암 석불입상, 세전리 석불입상, 낙동리 석불입상 등 고려 초기 남원지역 불상과 유사한 조형성을 보임. 그러나 양감이 줄어들어 편평한 신체와 양손을 가슴 앞으로 올려 역V자형으로 설법인 수인을 취하고 있는 자세, 편단우견의 층단식 옷주름, 이마와 머리에 뚜렷한 경계선을 표현한 점 등은 고려 전기에 조성된 전남유형문화재 제171호 함평 해보리 석불입상과 매우 유사하여 고려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됨.

남원 신파리 석조여래입상은 남원 및 전남지역에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고려초기 불상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음.

4. 예고기간 : 2020.12.11. ~ 2021.01.09. (30일간)

5. 의견제출 및 접수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지정 예고기간 내에 다음의 내용을 붙임 의견서에 작성하여 남원시청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 (063)620-6173

- 주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의견서

의견 제출자

- 성명(법인, 단체명) :
- 주소 :
- 생년월일(법인 번호) :
- 연락처 :

의견내용

○ 향토문화유산명 :

○ 의 견

-

상기 본인은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 . .

의견제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공고 제2020 - 2150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공고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석 매각대금 산출방식 규정 변경 (안 제30조제1항)
- 건물의 사용·대부료 산출시 층별로 부지평가액 감경비율 규정 삭제 (안 제31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공용면적 산출방식 개정 (안 제31조제4항)
- 미취업자 창업 지원을 위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 감면 조항 신설 (안 제32조제3항1호)

-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 감면조항 신설 (안 제32조제3항제2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연구시설, 지원시설, 관광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2조제3항제3호)

3. 입법예고기간 : 2020. 12. 11. ~ 2020. 12. 30.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10),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 12.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재 정 과 장

1. 개정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범위내 규정 정비

- 토석 매각대금 산출방식 규정 변경 (안 제30조제1항)
- 건물의 사용·대부료 산출시 층별로 부지평가액 감경비율 규정 삭제 (안 제31조제3항 삭제)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공용면적 산출방식 개정 (안 제31조제4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 미취업자 창업 지원을 위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 감면 조항 신설 (안 제32조제3항1호)
-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 감면조항 신설 (안 제32조제3항제2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연구시설, 지원시설, 관광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2조제3항제3호)

다. 상위법령 위임 근거조항 정비

-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18조의2제2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22조제4항)
- 대부료율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28조제5항제2호)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38조제2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등 반영 (안 제6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2. ~ 2020. 12.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20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3호”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원석 세제곱미터당 그 해의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를 “토석의 매각대금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면적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2조의 제목“(대부료 등의 감면)”을“(대부료·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를 “영 제3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남원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고시에 지정된 시설

제38조제2항 중 “영 제39조제1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자”를 “농업인”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생략) ② <u>영 제13조제3항제20호</u> 에 따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영 제13조제3항제23호</u> -----

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28조(대부료율)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
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
는 경우

3. ~ 6. (생략)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
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
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6항-----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율)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령」 제19조제4항 및 제12항-

3. ~ 6.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 토석의 매각대

채취허가량에 원석 세제곱미터 당 그 해의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⑤ (생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우

금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삭 제>

③ 제1항-----

-----.

④ -----
----- 감정평가법
인등-----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분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분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분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분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

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공용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전용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2. 공용면적의 30퍼센트

④ 제1항-----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면적 ÷ 해당부

⑤ (생략)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바. (생략)

사.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신설>

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사용료의 감면)

① -----

-- 영 제35조제2항-----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

<신 설>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남원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
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
원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
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
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
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
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정
하는 고시에 지정된 시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 ① (생략)
-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
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
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39조제2항-----

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
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
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 5. (생략)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
· 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
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
는 경우

7. ~ 9. (생략)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
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2. ~ 5. (현행과 같음)

6. -----

----- 농업인 -----

7. ~ 9. (현행과 같음)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
 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
 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
 자에 의뢰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법
인등-----.

남원시 공고 제2020 - 2156호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를 증진 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며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조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나.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의 강구 조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 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수립·시행 : 5년 주기
 -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다.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조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16조)
- 라.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 (안 제17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202), FAX(063-620-6711)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 1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를 증진 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며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조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나.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의 강구 조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 다.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조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16조)
- 라.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2. . ~ 2020. 12.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남원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복지 증진

제4조(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체육·건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정보지원 관련 사업(신문보급, 정보통신 등)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관련 사업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복지지원 관련 사업
7.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
8.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지원 관련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의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 2. 장애인문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남원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 지원

제17조(보호 및 육성)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4. 장애인단체 문화교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 관련 조문

제5조(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정보에의 접근 지원에 관련 사업(신문보급, 정보통신 등)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련 사업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복지지원에 관련 사업
7.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호 및 육성)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1.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
- 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 4. 장애인단체 문화교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시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추계결과(산출기초 등)

(단위:천 원)

사업명	산출기초	예산액	비고
계		267,883천 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지원	70,000원 × 8명 × 3회 =1,680,000원	1,680천 원	시비 100%
장애인단체민간경상사업	평균)7,760,000원 × 6개소 = 46,560,000원	46,560천 원	시비 100%
장애인단체법정운영비보조	평균)19,830,000 × 6개소 = 119,000,000원	119,000천 원	시비 100%
장애인보장구수리비지원	5,600,000원 × 1개소 = 5,600,000원	5,600천 원	시비 100%
장애인의날 기념한마당	17,000,000원 × 1개소 = 17,000,000원	17,000천 원	시비 100%
흰지팡이의 날	4,000,000원 × 1개소 = 4,000,000원	4,000천 원	시비 100%
수어문화제	10,000,000원 × 1개소 =10,000,000원	10,000천 원	시비 100%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1식 =2,500,000원	2,500천 원	시비 100%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4,000원 × 500장 = 2,000,000원	2,000천 원	시비 100%
여성장애인 가구 CCTV설치	1,500,000원 × 10대 = 15,000,000원	15,000천 원	시비 100%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점자교육 1식 = 6,713,000원	6,713천 원	도비30% 시비70%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	야학교실 1식 = 30,000,000원	30,000천 원	도비30% 시비70%
장애인 신문보급	2,500원 × 261명 × 12개월 = 7,830,000원	7,830천 원	도비30% 시비70%

○ 재원조달방안 : 비고 참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67,883	285,706	294,706	303,706	312,706	1,464,707
세 출		267,883	285,706	294,706	303,706	312,706	1,464,707
운영비		119,000	125,000	131,000	137,000	143,000	655,000
사업비		148,883	160,706	163,706	166,706	169,706	809,707
재원조달							
의 존 재 원	소계	13,360	14,840	14,840	14,840	14,840	72,720
	도비 (보조금)	13,360	14,840	14,840	14,840	14,840	72,720
	지방 교부세						
자 체 수 입	소계	254,523	270,866	279,866	288,866	297,866	1,391,987
	지방세	254,523	270,866	279,866	288,866	297,866	1,391,987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3.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063-620-6330)

참 고 1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81조(비용 보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지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2조의 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2조(정의)